

위험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이 **확보**됩니다

 **속초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및 위험성평가 교육

2026. 7. 22.(수)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이진우 부장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안전보건 종합솔루션전문기관

CONTENTS

- Ⅰ 2025년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Ⅱ 산업안전 정책 동향
- Ⅲ 위험성평가

I 2025년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총괄

구분	2025년 12월	2024년 12월	증감
사업장수	3,206,879개소	3,000,421개소	206,458개소
가입자수	22,754,436명	21,420,560명	1,333,876명
재해자수	147,130명	142,771명	4,359명
사고재해자수	113,305명	115,773명	△ 2,468명
질병재해자수	33,825명	26,998명	6,827명
사망자수	2,248명	2,098명	150명
업무상사고사망자수	872명	827명	45명
질병사망자수	1,376명	1,271명	105명
재해율	0.65%	0.67%	△ 0.02%p
업무상사고사망만인율	0.38‰ (0.383‰)	0.39‰ (0.386‰)	△ 0.01‰p (△ 0.003‰p)
질병재해만인율	14.87‰	12.60‰	2.27‰

I 2025년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사고사망자 현황

업종별

사고사망자 현황

- 건설업 361명(41.4%)
- 제조업 164명(18.8%)
- 서비스업 140명(16.1%)



발생형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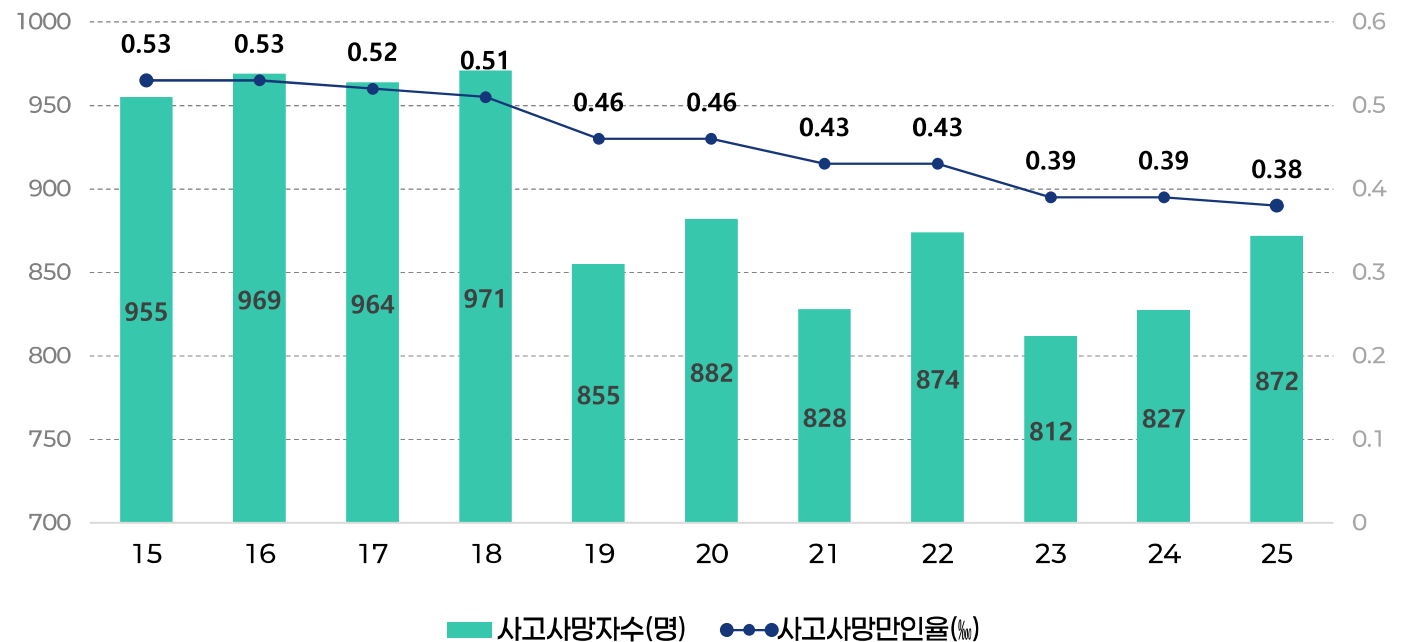
사고사망자 현황

- 떨어짐 280명(32.1%)
- 부딪힘 81명(9.3%)
- 교통사고 125명(14.3%)



최근 10년간 전체 사고사망재해 발생 추세 **‘25년 872명(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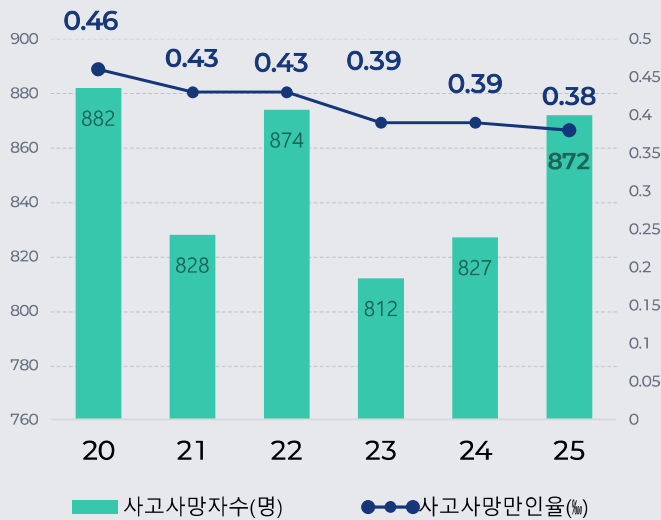
전년대비
+45명



☑ 사고사망만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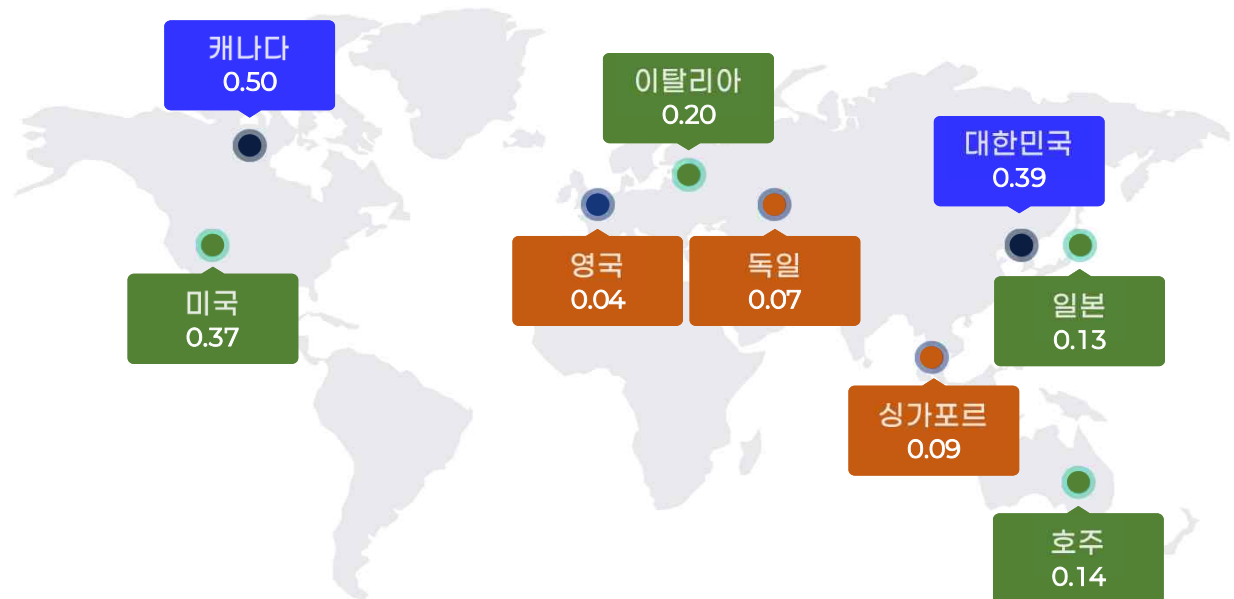
- OECD 회원국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9, 한국은 0.39로 OECD 평균 대비 34.5% 높은 수준

< 국내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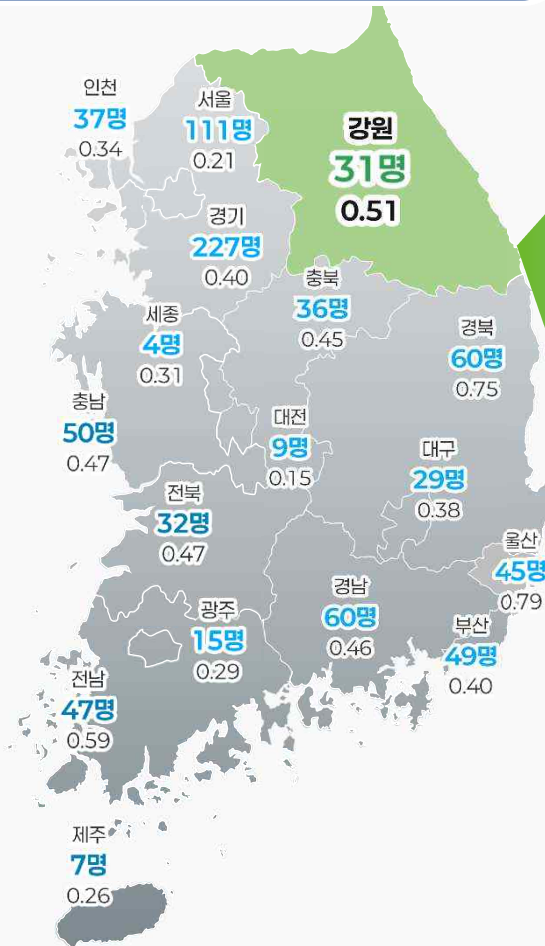


‘23년 사고사망만인율 0.3%대 진입,
그러나 여전히 OECD 10대국 평균 2배 넘어...
특히 건설업 사망률 ‘1위’ 불명예 차지

< 국가별 사고사망만인율(2023), (단위 %) >



지역별 사고사망만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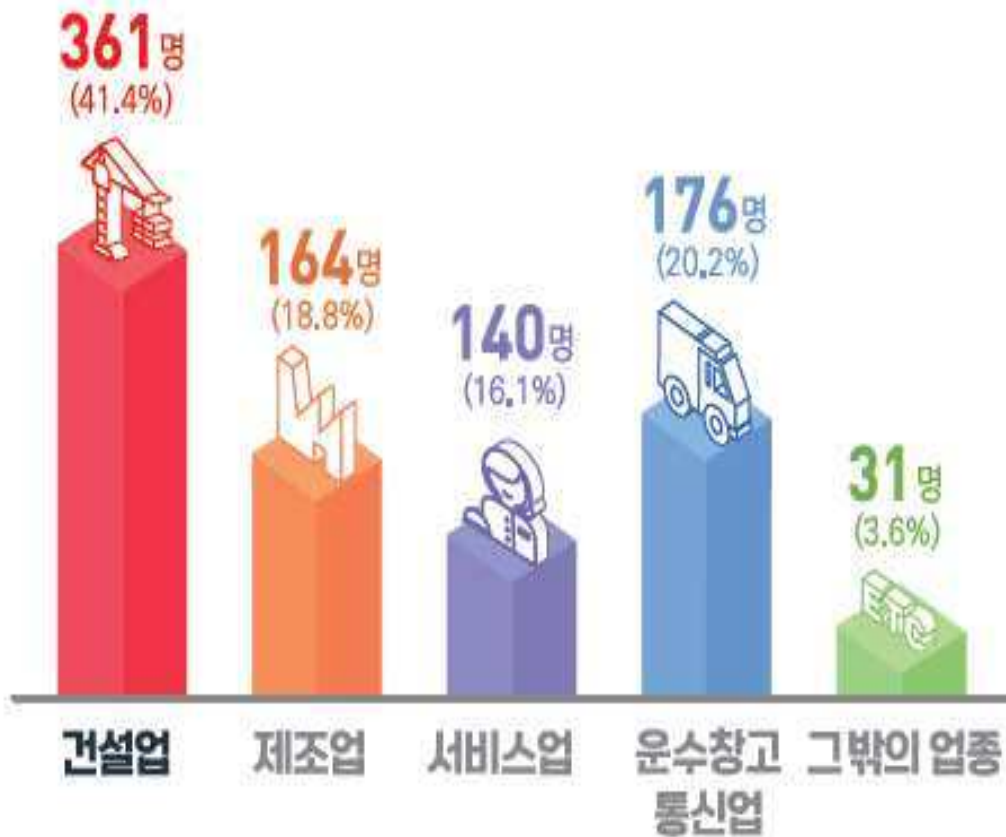
강원동부지사 관할 시·군별 재해자수 및 사망자수 현황

구 분	재해자수	사고재해자수	질병재해자수	사망자수	사고사망자수	질병사망자수
태백시	1,127	90	1,037	125	3	122
삼척시	840	143	697	29	3	26
정선군	615	140	475	76	2	74
강릉시	579	353	226	24	6	18
동해시	410	174	236	9	2	7
영월군	265	118	147	21	4	17
평창군	213	161	52	3	0	3
속초시	187	144	43	2	1	1
양양군	159	88	71	0	0	0
고성군	152	102	50	2	2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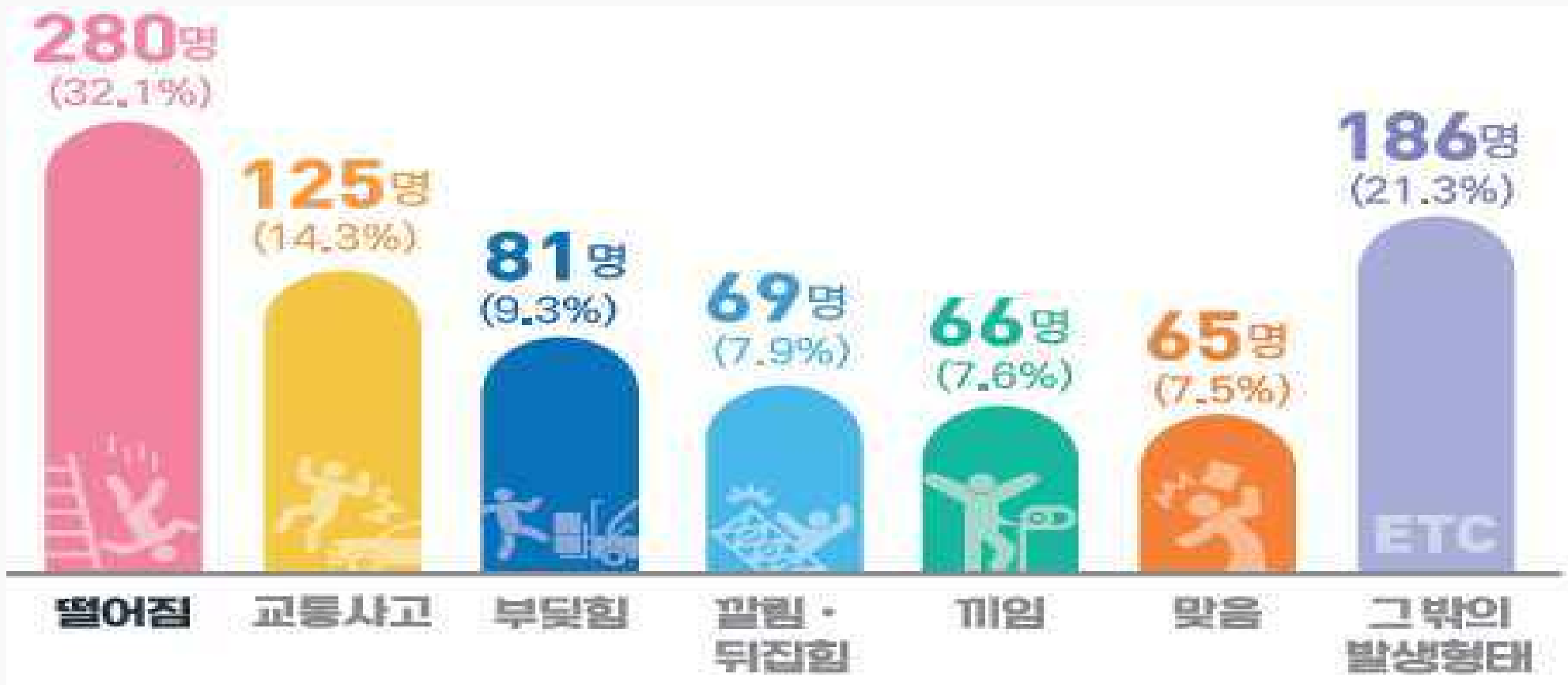
- 사고사망만인율 : 울산, 경북, 전남에 이어 **강원지역**이 전국 **4위/17개**
- 재해자수 : **속초시**가 강원동부지사 관할 10시·군 중 **8위**

I 2025년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종별 사고사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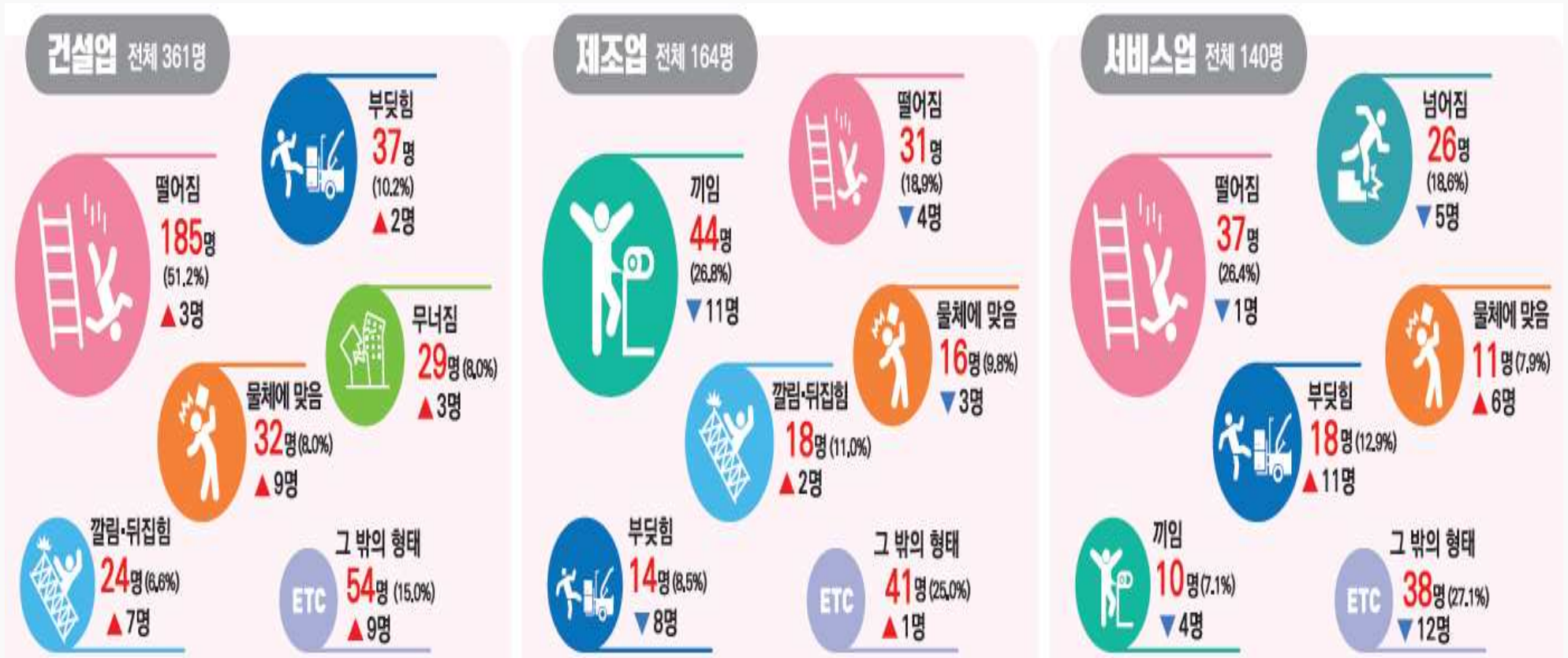


④ 발생형태별 사고사망자



I 2025년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주요 3대 업종별, 발생형태별 사고사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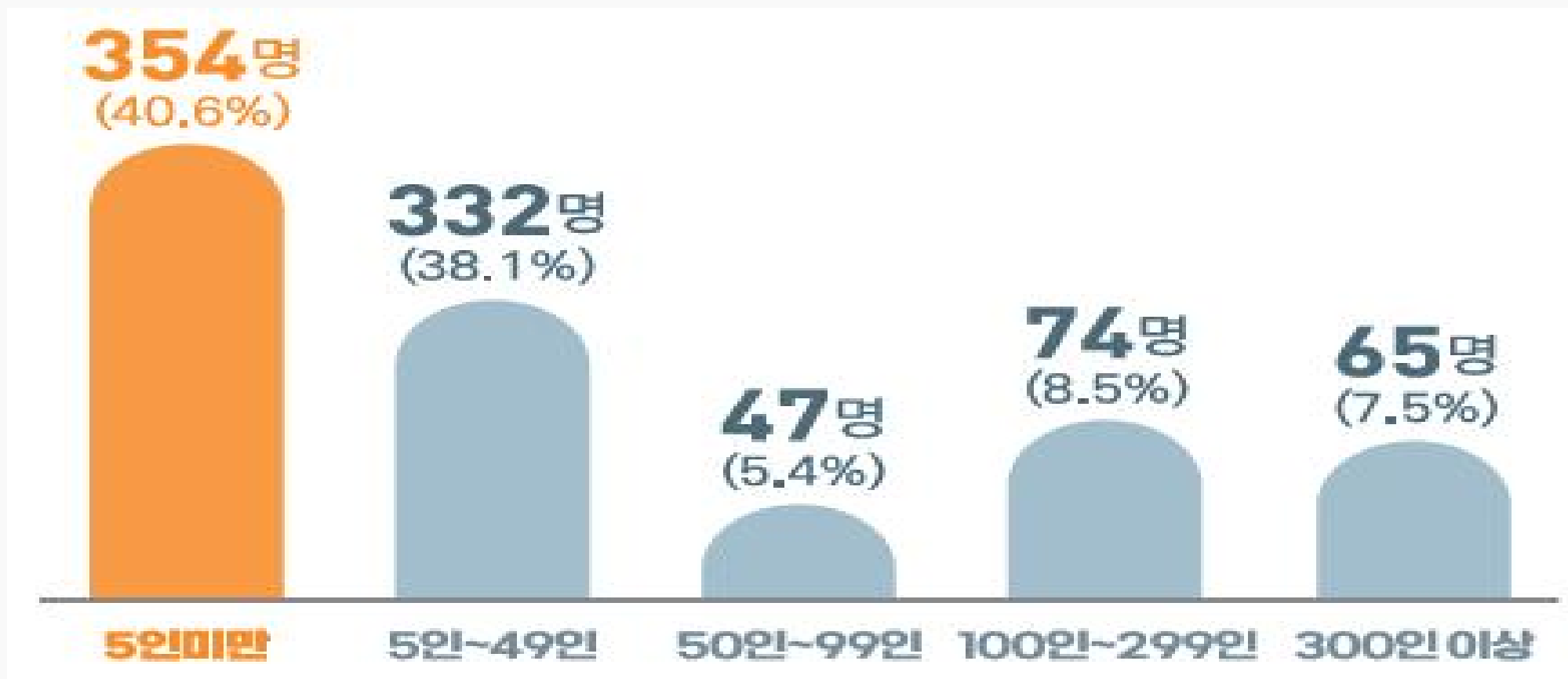
I 2025년도 산업재해 발생 현황

④ 성별, 연령대별 사고사망자



I 2025년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규모별 사고사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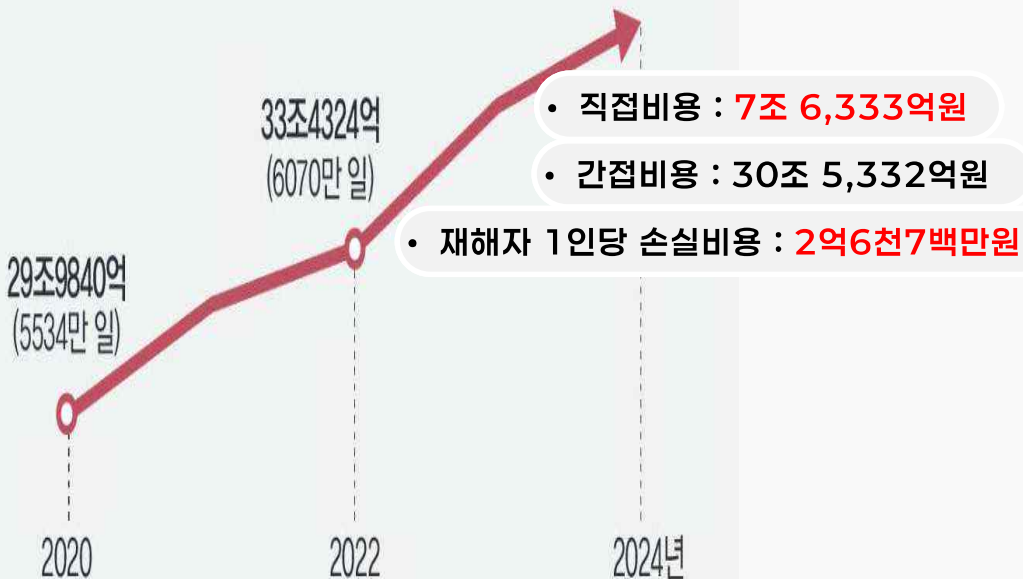


☑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 추정 현황

단위: 원. 괄호는 근로손실일수.

자료: 근로복지공단,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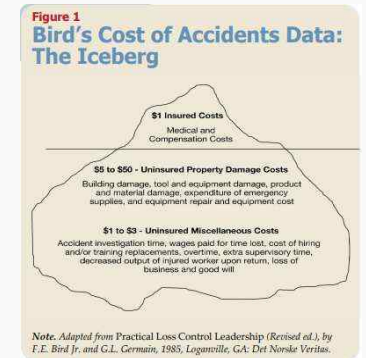
하인리히
(H.W. Heinrich)

직접비용:간접비용=1:4 제시



프랭크 버드
(F.E. Bird)

직접비용:간접비용=1:5~53 제시



⚠ Direct Cost

- 의료비용
- 보상비용

⚠ Indirect Cost

- 장비, 생산품 손실
- 생산 지연
- 신규직원 선발
- 교육훈련
- 직원 사기 저하



38조 1,665억 원

매일 1억 원씩 쓴다면?
(시간)

1,045년 동안 매일 1억 원을
써야 하는 천문학적 금액!



고려 시대
(서기 981년 성종 시절)

현재
(2024년)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매일 1억 원을 소비해야 바닥나는 돈

5만 원권으로
우주까지 탑 쌓기 (높이)



84km 높이로
높이로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에베레스트의 9.5배)

최대 아파트 단지
2개를 통째로! (부동산)

서울 고가 아파트 (20억)
19,083채 매입 가능



대한민국 최대 단지
(송파 웰리오시티급, 9,510세대)
2개를 통째로 구매

대한민국 온 국민에게
주는 보너스 (국가 규모)

전 국민 (5,100만 명) 대상
1인당 약 75만 원 지급 가능



전 국민 (5,100만 명) 대상
1인당 약 75만 원 지급 가능

대한민국 정부 예산 (약 670조 원) 기준
약 3주 (21일) 국가 운영 비용

✓

추진체계도



☑ 주요 내용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 대폭 확대

○ 10인 미만 사업장(50억 미만 건설 현장)의 추락·끼임·부딪힘 3대 사고 예방 지원 대폭 확대('26년(안) 433억 원 신설)

■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품목 집중 지원, 지원 수준 향상

지원 품목	[추락]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일체식 작업 발판, 지붕안전대 부착설비 [끼임] 노후 컨베이어, 롤러기, 방호장치 [부딪힘] 신체감지센서 등 지게차, 크레인 등에 장착할 수 있는 충돌예방장치
지원 수준	소요 비용의 최대 90% (기존 50~80%)

○ 안전관리 수준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기술지원과 연계 → 서류·절차 최소화하여 지원(Quick-pass) 확대('25년 8,000개소 → '26년 9,000개소)

☑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자 확충 지원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확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現) 50인 이상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부여(300인 미만은 외부 위탁 가능)
→ (改) 업종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단계적 확대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방안 신설 추진(선임 대상 확대 시행 시기와 연계)
 -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또는 민간 위탁 비용 지원 검토
 - 현장 경험을 갖춘 인력(5년 이상 경력)을 자체 선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 지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안전관리자 자격이 없더라도, 양성교육 이수 시 안전관리자 자격 부여('28년까지만 실시 예정)

☑ 주요 내용

☐ 선제적 기술지원 · 사후지원과 연계

- 기존 사고사망 중점 관리에 더해 영구 후유장애, 사고사망 전이 위험이 큰 **중상해재해(요양 기간 90일 초과) 발생 사업장 기술지원 도입**

* 사고사망 발생 이전 3년간 중상해 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 비율 37.6%('24년 사고사망 기준)

- 해당 사업장 신속 현장 방문,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활동을 지원하는 선제적 컨설팅 신설('26년 8천개소)
- 취약사업장 컨설팅으로 파악된 위험요인이 실제 개선되도록 고위험 사업장 대상 이행 점검 확대, 재정지원과 연계



주요 내용

① 중앙정부: 고위험 사업장 점검·감독 확대 (7만개소)

- 감독관 증원과 연계하여 감독 물량 대폭 확대('25년 2.4만 → '26년 5만 → '28년 7만개소)하여 사각지대 해소
 - 단순 점검(시정조치 우선) 보다 감독 비중 확대, 위반 시 법에 따라 즉시 집행

② 지방자치단체: 30인 미만 점검·감독 (3만개소) + 지역 특화 예방

- 감독 권한 위임 및 산업안전감독관 증원과 연계하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점검·감독 추진('28년까지 3만개소 목표)

③ 민간: 영세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상시 순찰 (51만개소)

- 역량·경험이 있는 민간·공공분야 퇴직자, 노사단체 소속 인원 등을 안전지킴이로 채용·위촉(1천명, '26년) → 영세사업장(18만개소) 집중 투입
 - * (예시) 소장, 건설업 안전관리자 등 경력자를 채용하여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1억 원 미만 초소형 건설 현장 등 집중 점검
-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재해 유형*에 대해서는 민간재해예방기관(現 2,124개소)을 통해 집중 지도·관리 강화(33만개소)
 - * 영세 축사, 공장 지붕 유지보수 등 추락 다발 공사 등

* 61만 개소 : 전체 사업장의 1/5 수준

- ✓ 고위험 사업장 점검·감독 확대
- ✓ 불시 패트롤 점검 신설



- ✓ 민간안전 지킴이(1천명) → 상시순찰(18만개소)
- ✓ 민간재해예방기관 → 기술지도(33만개소)

- ✓ 30인미만소규모사업장점검·감독
- ✓ 지역별 위험요인 예방활동 전개

☑ 주요 내용

☐ 사고 정보 공개 확대

- 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재해발생 경위, 기술적 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산업안전보건법)**
 - 既 조사된 재해 중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 시행 이전에 보고서 공개
-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 마련(예시: 반기)

☐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신설

- 재해 현황·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투자 등을 공시토록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여 안전보건 정보 공개 확대(산업안전보건법)
 - *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예정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을 위한 대한민국

통합검색

민원 ▼ 국민참여 ▼ 뉴스·소식 ▼ **정보공개 ▼** 정책소개 ▼ 기관소개 ▼ 이용안내 ▼

사건정보 공표목록

행정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공공데이터개방

청렴정책공개 +

예산·법령정보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정보공개 기타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인쇄하기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산업 현장의 동종·유사재해 예방을 위해 전문 기관에서 작성한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의2**

재해조사보고서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의 기술·구조적 원인 규명을 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사업주 등의 법령 위반 여부와 관련한 수사 결과와 무관합니다.

주요 내용

- 2026. 6. 1.부터는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의 이름, 업종, 사고원인이 국민에게 공개됨

1. 재해발생 사업장 개요

【재해발생 사업장】

사업장명	태인산업(주)	전화번호	
소재지	전북 정읍시	대표자	B
업종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근로자수	23명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내용	사료 생산 등

【재해자 소속 사업장】

사업장명	중정선산업기계	전화번호	
소재지	부산 강서구	대표자	C
업종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	근로자수	4~5명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내용	기계제조, 수리 등

2. 재해자 인적사항 및 상해정도

연번	성명	출생년도	소속	고용형태	상해정도
1	A	1967	중정선산업기계	상용	사망

3. 재해발생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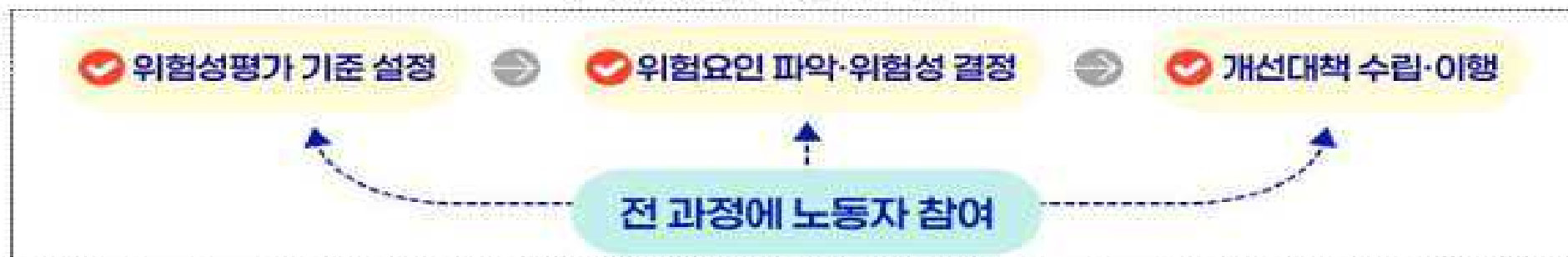
발생형태	끼임	기인물	파쇄기
'24.2.4.(일) 08:50경 전라북도 정읍시 소재 「태인산업(주)」에서 (주)정선산업기계소속 재해자가 도축부산물 중 뼈를 처리하는 파쇄기의 보조나이프 교체를 위해 파쇄기 내부에서 준비 작업 중, 태인산업(주)소속 근로자의 오인 조작으로 파쇄기가 작동하여 신체가 끼인 재해임. ※ 재해자는 병원 후송되어 치료 중 2/18 02:00경 사망함.			

☑ 주요 내용

☐ 위험성평가 현장 작동성 강화

- 중대재해 다발 업종의 위험성평가 표준모델, 고위험요인 자료 등 보급, 지역 산업단지 영세업체 대상 합동 교육·컨설팅 지원
- 위험성평가 미실시 및 필수 절차 누락 시 벌칙 적용, 해당 작업·공정 노동자 참여, 결과 공유 의무화 및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필수 절차]



④ 산안법 일부 개정('26. 2. 19. 개정, '26. 6. 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6.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6. 2. 19.>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6. 2. 19.>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9.>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⑥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 2. 19.>

☑ 과태료 부과 적용 시행일

벌칙

- ☑ 위험성평가 미 실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 미 참여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위험성평가에 근로자 대표 미 참여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 및 보존 미 실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위험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 ☑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6. 2. 19.)**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 ☑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 **2027년 1월 1일**
- ☑ 상시 5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 : **2028년 1월 1일**

④ 산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6. 5. 29. 개정, '26. 6. 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6] [고용노동부령 제455호, 2025. 12. 26, 타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1] [고용노동부령 제470호, 2026. 5. 29, 일부 개정]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① 사업주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1.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유해·위험 요인 파악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2. 제1호에 따라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3. 제2호에 따른 위험성 수준의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된 유해·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 수립·이행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P>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최초평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2. 정기평가: 제1호에 따른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P>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④ 산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6. 5. 29. 개정, '26. 6. 1. 시행)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37조의2(위험성평가에의 근로자 참여)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u>사업장 순회 점검의 방법</u>으로 참여시키되,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설문조사 2. 면담 3. 그 밖에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사업장 순회 점검에 <u>근로자를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u>에는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P>

☑ 산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6. 5. 29. 개정, '26. 6. 1. 시행)

<신 설>	제37조의3(위험성평가의 근로자 공유) 법 제36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2. 위험성평가 실시 후: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P>
<신 설>	제37조의4(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2.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제37조의3제2호에 따른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P>

④ 주요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 권한 위임 및 인력 확충

-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한을 부여*하고, 감독관 인력 확충 및 사업장 점검·감독 시 협업 강화

* (범위)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예방적 감독 수행, (권한) ①사업장 감독, ②사후조치 권한(사법경찰권)

- 「가칭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 매뉴얼 마련 등 전국적·통일적 집행 기준 마련

- 감독·수사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충원
(‘28년까지 중앙 + 지방자치단체 약 3,000여명 증원 목표)

- 중앙·지방 감독관 인력보강과 연계하여 점검·감독 물량 지속 확대

☑ 주요 내용

① 대국민 직접 위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안전 생활화를 위한 온라인·모바일 기반 「안전일터 신고센터」 개설·운영(8.29.~, 안전신문고 등과 연계)

- 신고된 사업장은 즉시 확인을 통해 위험 요인 개선 지도

현장
사례

· 건설 현장에서 고소작업 중 안전띠·안전고리 미체결로 추락 위험 신고(9.4.)
⇒ 현장 출동하여 ▲추락망 설치 후 보고, ▲안전 조치 철저히 할 것을 지도

- 산재 발생 위험 등 적발·신고 시 포상금 지급('26년(안) 111억 원)

- ①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②산재은폐·정부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미이행 신고 시 파격적으로 포상

- 중대한 사고 예방에 기여한 신고 사항은 추가적인 포상

[포상금 지급(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방호설비 미준수 등): 1건 당 50만 원
▲고의적인 법 위반(산재은폐, 정부명령 미이행 등): 1건 당 500만 원

④ 주요 내용

① 안전·보건 조치 의무 준수 촉진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 제도 신설(산업안전보건법)

* (예시) ①사망에 이르지 않지만, 의식불명,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②사업장 내·외 중대산업사고 우려
③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산업재해 발생 급박한 위험 등

- 유해·위험성이 높은 기계·원재료, 건설물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미비 시 적극적 시정조치 명령

■ 시정조치 미이행 시 사법처리 + 해당 기계·설비 관련 작업중지

-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적발한 경우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집행(10.1~)

■ 과태료 위반행위도 법정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6. 2. 19.)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신설)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제10조의2, 2026. 8. 1.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1]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2]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 안전보건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강화 및 신설) 위험성평가 제재 규정 신설 및 절차 강화 (제36조, 제175조, 2026. 6. 1. 시행)	위험성평가 실시 위반 시 제재(과태료 1,000만 원 이하) 신설 근로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미공유(과태료 500만 원 이하), 기록·보존 미이행(과태료 300만 원 이하) 시 제재 신설 - 상시 50명(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 2027. 1. 1.부터 - 상시 50명(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 2028. 1. 1.부터
	①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 요구 시 참여 보장 ② 위험성평가 결과 등 공지: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③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상시 주지 의무 규정
(강화)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제56조 및 제56조의2, 2026. 6. 1. 시행)	① 조사 범위 확대: 기존의 중대재해 외에 화재·폭발, 붕괴 등의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추가 (2026. 12. 1. 시행) ② 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및 공개 원칙 규정: 수사대상인 경우 공소 제기 이후 공개, 수사대상이 아닌 경우 공소 제기 여부 불문 공개 가능
(강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감독 참여 제23조, 2026. 8. 1. 시행)	①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도록 의무화 (기존: 고용노동부장관의 재량 사항) ② 근로감독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 보장(기존: 참여 근거 조항 없음)

☑ 재해원인조사 관련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6.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8호, 2026. 5. 29., 제정]



고용노동부(중대산업재해수사과), 044-202-8954

제3조(재해원인조사 대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원인조사를 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
2. 화재·폭발, 붕괴, 추락, 질식·중독, 화학물질 누출 또는 폭염작업 등으로 인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산업재해
 - 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화재·폭발, 붕괴 등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있었던 경우
 - 나. 재해자가 의식불명, 호흡 없음, 심정지, 신체 절단 또는 이에 준하는 생리학적 위중 상태이거나 중대한 손상이 있는 경우
 - 다. 동시에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나, 그 정도가 중대재해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 라. 폭염작업으로 인해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재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재난정보시스템 등 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 발생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④ 법의 취지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미 존재함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 입법된 것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책임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경영책임자**에게 사업 전체 종사자와 관계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부여, 좀 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고용노동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②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처벌에 그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으로

경영책임자가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를 하듯이 “종사자의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하에 스스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④ 적용 범위

하나의 사업을 장소를 달리하여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다수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그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봄

● 법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 다만, 50명(50억원) 이상은 '22.1.27.부터, 5~49명(50억원 미만)은 '24.1.27.부터 적용

-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하며
- 장소적 개념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 아니므로 본사와 생산을 담당하는 공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 의무 주체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적용대상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 • <u>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u>
개인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청와대, 노동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도 중대법 적용 받음

대한경제

2026년 3월 18일 수요일 020면 사회

“중대재해법, 사업장 쪼개도 근로자는 합산”

대법, '기업 전체' 기준 산정 판결
공장 근로자 50인 미만 주장에 제동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상시 근로자 수는 본사나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아니라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광폴리머 대표이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초나 서천 고

한 직접 행위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재해는 안전인력이나 예산의 확보와 같은 기본적인 시스템의 정비에서부터 현장의 구체적인 의무위반에 이르기까지 여러 원인이 중첩돼 발생하는 것이며, 위험 전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은 경영책임자나 사업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이나 입법자인 대한국민의 강력한 의지를 거스를 하등의 사정이나 연유를 찾을 수 없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거나 합의했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아 되라는 게 시이

판단이였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로였다.

특히 대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시행 이후 2년 뒤인 2024년 1월까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만 적용되도록 부칙을 뒀다. 이후에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대법원의 “이 번의 기 저요 다의르 주

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별로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장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돼 있더라도,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기자 lsw00@

시 요약

클립보드

크기 변경

저장

인쇄

닫기

☑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5.02.18 [대통령령 제35276호, 시행 2025.2.23.] 고용노동부

출처:법제처

본문

개정이유

개정문

변경조문

별표

예) 2>2조, 4-1>4조의1

이동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연혁](#) [판례](#) [문헌](#)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④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



- 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 ÷ 가동일 수
- 연인원 = 사업장에서 하루에 근무한 사람의 수 X 가동일 수
- 가동일 수 = 근로자의 사업장 근무일 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예시

이해가 쉽도록 예를 들어볼게요. 월~금 동안 10명이 일하고 토요일에는 4명이 일하고 일요일이 휴무인 사업장이 있어요.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몇 명일까요? 빠른 계산을 위해 한 달은 4주라고 가정할게요.



- 연인원 = [평일에 근무한(10명) x 평일 가동일 수(20일)] + [토요일에 근무한(4명) x 토요일 가동일 수(4일)] = 216명
- 한 달 가동일 수 = 평일 가동일 수 + 토요일 가동일 수 = [평일(5일) x 4주] + [토요일(1일) x 4주] = 24일
- 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216명) ÷ 한 달 가동일 수(24일) = 9명

☑ 상시 근로자수 산정 시 포함 대상

-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일용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사무직 근로자
- 공무원
- 외국인 근로자(불법입국 또는 체류자격 만료 여부와 관계 없음)

☑ 상시 근로자수 산정 시 포함 비 대상

-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제3의 근로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에는 포함되지 않음
(예) 도급인 소속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수급인 소속 5명 미만 → 법 적용 여부 : 도급인 O, 수급인 X
도급인 소속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수급인 소속 5명 이상 → 법 적용 여부 : 도급인 X, 수급인 O
-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 보호 대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사자의 범위

- 1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2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3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이 된 경우
- 각 단계의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자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 노동부 질의회시

11.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최종단계의 하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

Q 질의

- A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며 B라는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고, B업체가 다시 C라는 전문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즉,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도급인이 최종 단계의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A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다목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를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음

④ 노동부 질의회시



회시

-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 따라서 도급인은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 모든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605, 2022.2.17.)

☑ 노동부 질의회시

12.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여부



질의

- 원청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과 수급인 대표도 보호 대상 인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다목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를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 따라서 도급인은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61, 2022.5.17.)

☑ 노동부 질의회시

92.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평가해야하는 수급인의 범위



질의

- 당사(건설업 및 건물관리업)에서 단기(3~7일) 또는 소액(30만원 미만) 유지 보수공사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협력업체에 대한 적격성 평가 및 안전평가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도급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도급등의 계약기간 또는 공사금액 등에 관하여는 따로 예외를 두지 않으므로, 단기 또는 소액 유지보수공사라 하더라도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적격성 평가 및 안전평가를 이행하여야 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4346, 2022.11.7.)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1

사망자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 ☑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④ 직업성질병

① 인과관계의 명확성 ②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③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규정

1.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애 등 급성중독
2. 납이나 그 화합물(유기납 제외)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蒼白), 복부 산통(産痛), 관절통 등 급성중독
3.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4. 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 급성중독
5.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 급성중독
6.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애,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 급성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靑色症) 등 급성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 소실(消失),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중독
9. 시안화수소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0. 불화수소·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청색증,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중독
11. 인[백린(白燐), 황린(黃燐)] 등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동소체(同素體)로 한정]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2. 카드뮴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 직업성질병

13. 작업환경측정 대상 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4.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또는 염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해당 물질 비노출 3개월이 지난 경우 제외)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제외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에 노출(해당 물질 비노출 3개월이 지난 경우 제외)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염 제외
17. 보건의료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
18.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19. 동물이나 그 사체, 짐승의 털·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20.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거나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또는 공기색전증
(기포가 동맥이나 정맥을 따라 순환하다가 혈관을 막는 것)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
24.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④ 온열질환의 정의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환
대표적인 온열질환에는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음



☑ 일사병 vs 열사병

땀이 난다

땀이 줄줄 흐른다면?

일사병

- ☑ 신체 온도 37-40도
- ☑ 기력 저하, 두통, 어지러움, 구토 증상
- ☑ 과도한 땀 배출

햇갈리기 쉬운 일사병과 열사병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주세요!



물리적 도구를 사용해 체온을 낮춰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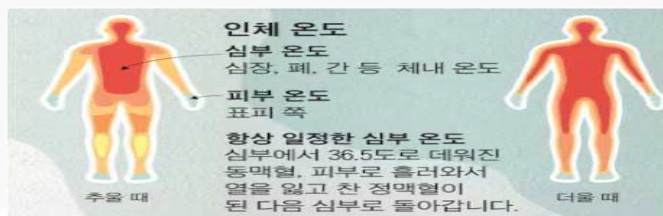
땀이 안 난다

땀이 나지 않는다면?

열사병

- ☑ 심부 체온 40도 이상
- ☑ 중추신경계 이상, 의식 변화, 발작 증상
- ☑ 땀이 거의 나지 않음

☑ 일사병 치료 vs 열사병 치료



일사병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며,
옷이나 불필요한 장비는 제거해야 함

의식이 명료하고 구토 증상이 없다면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고,

대부분 증상은 즉시 회복되는 편이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탈수가 심하면
정맥주사를 통한 수액 보충이 필요하므로,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함

열사병

환자의 심부 체온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질식 위험이 있으니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아야 하며,

응급조치로는 환자의 의복 제거 후
시원한 환경에서 물수건으로 몸을 덮고
선풍기 등으로 시원한 바람을 쐬게 해
체온을 낮춰주는 방법이 있음

☑ 체감온도 단계별 조치 사항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 다음 중 하나 이상 조치]

- 1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가동



- 2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 3 폭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33도 이상(폭염특보 기준)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다만,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 지급·가동 또는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착용 등 조치



☑ 체감온도 단계별 조치 사항

! 35℃ 이상 폭염장소에 대한 보건조치

체감온도	조치 사항
35℃ 이상 (권고)	☑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중지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 업무담당자 지정하여 노동자 건강상태 확인
38℃ 이상 (권고)	☑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온열질환 민감군 옥외작업 제한 ☑ 업무담당자 지정하여 노동자 건강상태 확인

☑ 계절별 체감온도 계산식

여름철 체감온도 (기온, 습도)

체감온도

$$= -0.2442 + 0.55399T_w + 0.45535T_a - 0.0022T_w^2 + 0.00278T_wT_a + 3.0(\text{기온 } 3.5)$$

$$\begin{aligned} * T_w = & T_a \text{ATAN}[0.151977(RH+8.313659)^{1/2}] + \\ & \text{ATAN}(T_a+RH) - \text{ATAN}(RH-1.67633) + \\ & 0.00391838RH^{3/2} \text{ATAN}(0.023101RH) - 4.686035 \end{aligned}$$

** T_a : 기온($^{\circ}\text{C}$), T_w : 습구온도(Stull의 추정식** 이용),
RH : 상대습도(%)

겨울철 체감온도 (기온, 바람)

체감온도

$$= 13.12 + 0.6215T_a - 11.37 V^{0.16} + 0.3965 V^{0.16}T_a$$

* T : 기온($^{\circ}\text{C}$)

V : 10분 평균 풍속(km/h)

☑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4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위임

- ☑ 스스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의무 사항!!
- ☑ 제1호는 9개, 제4호는 4개로 시행령에 세부사항을 각각 규정

④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7.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8.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을 대비하여 조치 매뉴얼 마련, 조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관리비용,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 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2.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3.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4.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 산안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 마련,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3호 조치를 한 것으로 같음

④ 벌칙 규정

- ④ 의무 위반 + 중대산업재해 발생 -> 처벌
- ④ 의무 이행 + 중대산업재해 발생 -> 미처벌

고용노동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③

경영책임자 면책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책임지도록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는
근로자의 안전규칙 준수 의무 위반이 아니라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이러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직업성 질병 관련] 두성산업 vs 대흥알앤티

같은 '중대재해법' 위반했는데, 검찰 기소여부는 같았다 왜?

직업성 질병 중대재해 나왔다...창원 두성산업서 16명 급성중독

입력 2022-02-18 09:35 수정 2022-02-18 10:00



두 사업장 모두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동일 세척액 사용 중 근로자가 집단으로 급성 간 중독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환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 두성산업은 '중처법' 1호 기소

✓ 대흥알앤티는 '산안법 위반'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 여부에 따라 기소 여부 차이 발생
(위험성평가 실시, 유해요인에 대한 개선책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인정)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

- ✓ 검찰 기소 125건, 불기소 28건 이상(2025. 12.추정)
- ✓ 사고 발생 후 기소까지 대략 10~24개월 이상 소요(기소된 사안 기준)
- ✓ 법원선고 : 약 100건(무죄 10건 외 유죄), 실형 8건(1심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

- 중대법, 산안법 : 집행유예 비율이 80%를 상회
- 타 법령 : 집행유예 비율 약 30%

☑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 약 100건 이상의 1심 판결선고가 있었음(2026. 2. 28.자 기준)

☑ 1심 판결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구 분	건 수	양 형
계	100건↑	
무죄	10	적용 유예(2건), 경영책임자 부정(2건), 구성요건흠결(6건)
실형	8	• 15년(1건) • 2년(3건) • 1년6월(1건) • 1년(2건) 10월(1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76	• 징역 1~2년 • + 집행유예 2~3년형 다수
벌금	6	• 1천만원(1건), 2천만원(2건), 3천만원(2건) • 5천만원(1건)